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71 발의연월일: 2024. 9. 12.

발 의 자:노종면·황정아·김성환

박홍배 • 김윤덕 • 김교흥

문금주 • 윤건영 • 소병훈

박 정・박상혁・조승래

정일영 · 허종식 의원

(14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자료를 행정부에 대하여 요구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의 의결이 필요함. 그런데 관례상 국회의원 1인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행정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국정조사 외에 정기회와 임시회 전반에 걸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 없이도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관의 장이 문서로 미제출 사유를 소명하는 소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는 기존처럼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자료요구 절차를 밟도록 하고자 함. 또한, 그에 따른 처벌 조항을 강화하여 자료요구에 대한 응답률을 높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자함(안 제1조·제2조·제5조 및 제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노종면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39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 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정조사와"를 "국정조사 등과"로 한다.

제2조 중 "국정조사와"를 "국정조사 등과"로 한다.

제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위원은 제1항에"를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본문에"로 하며, 같은 항후단 중 "위원은"을 "위원회의 위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필요한 경우"를 "필요하거나 의원 또는 위원회의 위원이 요구한 경우"로 한다.

다만, 의원 또는 위원회의 위원이 「국회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그 직무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할 때에는 의원 또는 위원회의 위원 본인이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제12조제1항 중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를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국회법」 제12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의원 또는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위원으로부터 서류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이 문서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 제출을 거절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3년"을 "5년"으로,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등의 제출 요구 및 처벌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과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의원 또는 위원회의 위원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에서의	제1조(목적)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u>국</u>	<u>국</u>
정조사와 관련하여 하는 보고	정조사 등과
와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감	
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 국회	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
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	
나 <u>국정조사와</u> 관련하여 보고	- <u>국정조사 등과</u>
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	
한 사진 • 영상물(이하 "서류등"	
이라 한다)의 제출 요구를 받	
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	
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	
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	
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	
에 따라야 한다.	
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국정감사	
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	
가 이 법에 따른 보고나 서류	

등의 제출 요구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때에는 본회의의 경우에는 의장이,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요구서를 발부한다. <단서 신설>

② 의원 또는 <u>위원은 제1항에</u> 따라 출석요구할 증인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또는 <u>위원은</u> 증인 신청의 이유, 안건 또는 국정감사·국정조사와의 관련성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⑦ 제1항의 요구서의 송달을위하여 <u>필요한 경우</u> 의장 또는위원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

<u>다만, 의원 또</u>		
는 위원회의 위원이 「국회		
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그		
직무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할 때에는 의원 또는		
위원회의 위원 본인이 해당자		
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		
부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본문에		
,		
<u>위원회의 위원은</u>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필요하거나 의원 또는		
위원회의 위원이 요구한 경우-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 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 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 게 증인 · 감정인 · 참고인의 주 소 · 거소 · 영업소 · 사무소, 전 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 다) 또는 출입국관리기록(요구 서의 송달을 위하여 필요한 범 위로 한정한다)의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제공을 요구받은 경찰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 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개인정 보 보호법」 제18조, 「형사사 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1 제6조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지 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⑧ (생 략)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정당 저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 명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⑧ (현행과 같음)
● (원왕가 붙음) 세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u>보고 또는</u>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 (「국회법」 제128조제2항 단 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u>3년</u> <u>서에 따라 의원 또는 위원회나</u> 소위원회의 위원으로부터 서류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이 문서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 제 출을 거절한 경우는 제외한다) ---5천만원-----② (현행과 같음)

② (생략)